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질환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치매요양병원(이하"치매요양병원"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치매요양병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25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치매요양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와 요양
2. 치매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3. 기타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사항

제4조(운영) ①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치매요양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10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이 끝난후 계속 재계약 할 수 있다.

1. 의료법인 (단,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3년이상 운영경력이 있는자)
2.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매요양병원 운영을 위탁 받은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③ 도지사는 수탁자가 운영비의 적자분 발생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운영비의 일부와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치매요양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수탁자는 설계, 구입장비 승인등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도지사의 소유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의료수가) ① 환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수가 적용은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6조(관리) 도지사는 치매요양병원의 적정한 운영 및 입원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요양치료 및 그외 다른 서비스의 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수탁자가 정하여
승인 받도록 하게 한다.

1. 목적 및 운영방침(기본방침, 치료·간호·보호의 기본방침,
지역행정과 연계방침, 직원연수방침등)
2. 직원의 정원, 직종 및 직무내용
3. 입원자의 정원
4. 입원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그외 기타 서비스 내용
5. 입원자등의 준수사항
6. 비상재난(화재등) 대책
7. 기타 치매요양병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7조(입원 및 퇴원) ① 치매환자의 입원은 신체의 상황 및 질병의 상태를 참고하여 입원치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를 입원신청을 받아 입원시킨다.

② 퇴원의 판정은 신체의 상황 및 질병의 상태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입원후 3개월이내에 적절히 실시하되, 입원치료가 더이상 필요없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치매요양 시설등에 이송 또는 귀가시킨다.

제8조(기록의 정리) 치매요양병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관리에 관한사항

가. 운용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 급여, 연수등에 관한사항

다. 월간 및 연간의 사업계획표와 사업실시 상황표

2. 입, 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기록

3. 요양, 치료 및 그외 다른 서비스에 관한기록

가. 입원자 기록대장(병력, 생활력, 가족의 상황등을 기록한것)

나. 진료, 간호, 기능훈련등의 일지

다. 진료기록등 진료에 관한기록

4. 회계경리에 관한기록

5. 시설 및 구조설비에 관한기록등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위탁 재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등의 손. 망실시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와 감독) ① 도지사는 치매요양병원을 운영하는자 및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구입업무 등을 대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을 조사 및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치매요양병원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2. 수탁자가 운영약정사항을 위반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